

② 개정조문

□ 지방세법

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|--|
| 제7조(납세의무자 등) ① ~ ⑩ (생략)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유상</u> 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 | 제7조(납세의무자 등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 ⑪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</u> ---. |
| 1. ~ 3. (생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4.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<단서 신설> | 4.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 정액(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이하 이호에서 같다)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.</u> |
| 가. ~ 라. (생략) |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|
| ⑫ ~ ⑯ (생략) | ⑫ ~ ⑯ (현행과 같음) |